

일본산 농식품 '방사능 검사요구'로 잠정수입중단

* 2011. 4. 18 상하이 aT센터

-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발표한 '11.4.8일자 공고에는 일본 정부에서 발급한 방사능 합격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일본 측에서는 동 서류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중국 측 통관이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임

<주요내용>

- '11.4.17 중국 법제만보¹⁾가 일본 교도통신사의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일본산 농식품의 수입이 잠정 금지됨
 - 교도통신사는 중국 정부가 지난 4.8일부터 일본 농식품 수입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통관 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서 발급한 방사성 물질 검측합격 증명'을 발급하는 공식부서가 일본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함
- 이에 북경 출입경검사검역국 관계자는 4.15(금) 현재까지 일본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정부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힘
- 한편, 매일중국경제 신문에 따르면 중국산 농산물이 일본에서 환영받고 있어 수입주문량이 전년 동기대비 10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1) [첨부 1] 참고

<상하이 aT 의견>

- 실제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본산 수입제한 강화 공고²⁾에 따르면 일본 12개도와 현에서 생산된 농수산품의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일본 기타 지역 농수산품은(수입은 허용하되) 방사능 검측합격 증명을 통관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 중국 내 일본식품 바이어 의견에 따르면 현재 중국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내 공식발급부서가 없어 수입통관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중·일 양국정부 간 방사능 검역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전함

2) [첨부 2] 참고

[첨부 1] 기사문 발췌 전문

중국, 일본 식품 수입 전면 금지한 듯

일본 교도통신사가 일본 농림수산업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 12개 도와 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품을 수입할 경우 통관 검역 신고 시 일본 정부에서 발급한 방사성 물질 검측 합격 증명 및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내 이러한 증명을 발급하는 공식 부서가 없기 때문에 통관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실제로 일본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 및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경출입경검사검역국 관계자는 4월 15일(금)까지 일본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국가질검총국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본 기사를 전송하기 전까지 국가질검총국에서는 일본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교도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중국국가질검총국은 최근 수입 제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고 한다. 현재 일본은 중국 측의 수입 제한 완화 설득을 시도하고 있지만 EU와 한국도 같은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일본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지진은 전 세계의 동정을 받고 있지만 원전 방사능 유출 사태를 완화하지 못하면 일본 식품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일본의 이웃 나라인 중국과 한국은 일본 수입 농산품에 대한 검사가 엄격해질 것이라고 평론한다.

이에 일본 지지통신사는 일본은 중국이 일본 식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중국 측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유출 통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또 여러 가지 농산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서 중국은 일본 12개 도와 현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다고 우려했다.

반면, 매일중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걱정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품이 일본에서 크게 환영을 받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받은 주문량의 규모가 전년대비 10배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로 가면 일본 국내의 식품 업체는 심한 배척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원 : 2011년 4월 17일 법제만보

(http://www.fawan.com.cn/html/2011-04/17/content_302015.htm)

[첨부 2]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일본 수입 농식품에 대한 검사 검역 감독 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총국 2011년 제44호 공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가 농식품 품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세계 각 지역에서 대응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 수입한 농식품의 품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당일부터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군마(群馬)현, 도치기(栃木)현, 이바라키(茨城)현, 미야기(宮城)현, 야마카타(山形)현, 니가타(新潟)현, 나가노(長野)현, 야마나시(山梨)현, 사이타마(埼玉)현, 도쿄(東京)도, 지바(千葉)현 등 12개 지역의 농식품 및 사료의 수입을 금지한다.

2. 일본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 및 사료를 수입할 경우 통관 검역 신고 시 일본 정부에서 발급한 방사성 물질 검측 합격 증명 및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지 검사 검역 부서는 수입 농식품 및 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합격할 경우 수입을 허가하며 불합격할 경우 규정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3. 각지 검사검역 부서는 규정에 따라 대중국 일본 수입 식품의 모든 해외 수출상 또는 대리상에 대한 등록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일본 식품 수입상은 요구에 따라 수입 및 판매 기록 제도를 실시하고 대중국 일본 수입 식품의 명칭, 규격, 물량, 생산시기, 생산 또는 수입 로트 번호, 유통기한, 수출상 또는 구매자의 명칭 및 연락처, 납품시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일본에서 수산물(HS코드 : 0302110000-0307999090, 1212201010-1212209090, 1603000090-1605909090)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 동식물검역허가증신청서'에서 다음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산지'란에서 수산물 원료 양식 지역이 위치하는 현의 명칭이나 어획 지역 및 해당 FAO 어구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운송노선'란에서 가공 공장의 주소 및 제품의 운송 노선을 표기하여야 하고 일본 국내 운송할 경우 경유하는 현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의 경우 선적항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2011년 4월 8일

※ 자료원 : 중국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